

#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84
----------	------

2002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2년 6월 25일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2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 6. 26)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이 기호)

### 가. 편성사유

-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및 보조금 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 여건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 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조 1,328억 1,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59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11.2% 증가된 규모임.

#### 다.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내역

- 국가부담수입은 3,364억 7,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추가분 등 경상교부금 1,669억 7,300만원, 학교 신·증설 시설교부금 750억 7,300만원, 지방교육채원금 상환 738억 4,500만원, 특별교부금 163억 7,700만원, 증액교부금 30억 3,300만원, 국고보조금 11억 7,500만원임.
- 서울시 전입금은 322억 6,900만원 증액되었는데
  - 법정전입금으로 교원봉급 326억 4,300만원, 지방교육세 9억 9,000만원 증액되고, 시세전입금 21억 900만원 감액되었음.
  - 비법정 전입금으로 도서관 운영비 등 7억 4,500만원 증액되었음.
-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35억 3,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31억 2,300만원, 재산수입 4,3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3억 6,800만원임.
- 지방교육채 수입은 430억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2004년도 신설교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임.
- 주민부담수입은 6억 6,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서울시 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된 체육특기육성학교 및 전국 소년체전 강화훈련비임.

#### 라. 세출예산안 4,159억 4,8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

- 인건비는 1,157억 3,200만원인데, 인건비 추가 소요액 1,153억 2,500만원, 교원명예퇴직 수당 4억 700만원임.
- 기관운영비는 7억 6,900만원인데,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6,900만원, 성동교육청 청사 임차료 등 7억원임.
- 학교경상운영비는 30억 4,800만원인데, 공공근로자 인건비 21억 9,900만원, 남·여공학전환비 등 8억 4,900만원임.
- 사학 재정지원은 376억 5,400만원인데, 전액 인건비 추가 소요액임.

- 교육사업비는 131억 6,100만원의 편성내역
  - 증액된 금액은 총 207억 7,500만원으로 학력검사 41억 7,300만원, 학습자료개발 20억 6,300만원, 전산보조원 지원 45억 8,700만원, 교직원 국외연수 5억 4,000만원, 각종체육대회 출전지원 9억 1,300만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 13억 1,400만원, 교과서 무상 지원 21억 9,000만원, 기타사업 지원 49억 9,500만원 등이며
  - 감액된 금액은 76억 1,400만원으로 학교컴퓨터보급 10억 9,900만원, 교단선진화 6억 6,600만원, 교원연수지원 14억 6,500만원, 학비지원 26억 4,600만원, 원어민영어교사 주거비 10억 2,400만원, 기타 7억 1,400만원 등임.
  
- 시설사업비는 1,225억 4,400만원의 편성내역
  - 학교 신·증설은 1,038억 4,500만원으로 학교신설 804억 6,500만원, 교실증축 177억원 300만원, 강당 및 체육관 신설 44억 8,000만원, 내부비품비 11억 9,700만원임.
  - 교육과정개편시설은 63억 4,200만원임.
  - 교육환경개선은 68억 8,400만원으로 공립학교 33억 5,000만원, 사립학교 35억 3,400만원임.
  - 행정기관 시설은 23억 100만원이며,
  - 지원기관 및 기타시설은 3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채 상황
  - 금년도 원·리금상환 총액은 2,025억 1,200만원이며, 본예산에 889억 8,500만원, 이번 추경에 1,008억 4,800만원, 합계 1,898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상환예정액 보다 126억 7,900만원 부족하게 편성하였음. 그러나 부족금 전액은 금년도 하반기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될 예정임.

○ 예비비 편성내역

- 예비비는 22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말 중앙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출될 봉급조정수당 221억 4,800만원과 전년도 국고보조 반납금 4,400만원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임령)

□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총 규모는 4조 1,328억 1천 4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 3조 7,168억 6천 6백만원 보다 4,159억 4천 8백만원(11.2%)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전입되는 법정·비법정 전입금 및 2004년 개교예정학교의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수입을 재원으로 OECD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의 반영과 2002년 상환할 지방채 원금을 조기 상환하여 예산의 부담이 경감되게 편성한 예산이라 할 수 있음.
- 세입예산은 4,159억 4천 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
  - 국가부담수입은 경상교부금(1,669억 7천 3백만원), 시설교부금(750억 7천 3백만원), 지방채상환금(738억 4천 5백만원), 증액교부금(30억 3천 3백만원), 특별교부금(163억 7천 7백만원), 국고보조금(11억 7천 5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3,364억 7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서울시 전입금은 법정전입금 315억 2천 4백만원과 비법정전입금 7억 4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322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1억 2천 3백만원과 대관료 및 사용료 증가 등으로 35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히, 2004년 개교 예정학교의 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방교육채를 430억 2백만원 신규 발행하며,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지원금 등으로 기타지원금 6억 6천 7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보다 4,159억 4천 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
- 지방재정법 제36조, 2002년도 예산총칙 제6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및 타 기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교부금, 보조금 등 목적지정 경비의 우선사용액 1,384억 9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지방채발행 사업인 2004년 개교 예정학교의 부지매입을 위하여 430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추경 증액분 4,159억 4천 8백만원에서 우선 사용액 1,384억 9천 7백만원과 지방채발행 사업인 부지매입비 430억 2백만원을 제외한 2,344억 4천 9백만원으로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음.

· 인 건 비	1,157억 3천 2백만원
· 기관운영비	6억 5천 1백만원
· 학교경상운영비	5억 1천 7백만원
· 사학재정결함지원비	376억 5천 4백만원
· 교육사업비	27억 6천 1백만원
· 시설사업비	279억 3천 9백만원
· 지방채상환	270억 3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봉급조정수당 등)	221억 9천 2백만원
소 계	2,344억 4천 9백만원

## □ 세출예산 분야별 구체적 내용

첫째, 인건비에 대한 증액분 1,157억 3천 2백만원은 당초예산대비 1,378억 8천만원이(6.6%)증액된 것으로써 변동사유는 퇴직수당부담금 기준액 조정(3.091% → 2.091%)으로 118억 2천 2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당초 본예산 미편성 805억 7천만원 및 2001 봉급조정수당 지급분 본봉산입과 7.20 교육여건 개선으로 인한 교원증원(646명) 등으로 691억 3천 2백만원이 증가된 결과이며, 이는 본예산 편성 이후 여건변동 및 추가신설·인상된 부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법정 의무경비 계상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다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둘째, 기관운영비와 학교경상운영비에 대한 증액분 6억 5천 1백만원(우선사용액 118백만원 제외)과 5억 1천 7백만원(우선사용액 2,531백만원 제외)은 각각 당초예산 대비 3.1%, 1.2% 증액된 것으로써 변동사유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인상분 및 공공근로인건비 반영과 공립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교 지원 등에 따른 학교운영비 반영분으로써 어려운 교육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함이 타당할 것임.

셋째, 사학재정결함지원비는 당초예산액 4,941억 4천 9백만원에서 376억 5천 4백만원(7.6%)이 증액된 5,318억 3백만원으로써,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추진으로 교원정원의 증가에 따른 기간제교사 인건비와 성과상여금 및 봉급조정수당을 반영한 것으로써 학교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재정결손액을 지원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사학재단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지원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넷째, 교육사업비는 당초예산액 2,771억 4천 7백만원 보다 131억 6천 1백만원 (4.7%)이 증액된 2,903억 8백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력검사	41억 7천 3백만원
· 교수학습방법 개선지원	10억 8천 만원
· 전산보조원 지원	45억 8천 7백만원
· 학습자료 개발	9억 8천 3백만원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13억 1천 4백만원
· 교과서 무상지원	21억 9천 만원
· 교직원 국외연수(영어교사)	5억 4천 만원
·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59억 8백만원
· 학교 컴퓨터 보급	△10억 9천 9백만원
· 학비 지원	△26억 4천 6백만원
· 원어민 영어교사 주거비	△10억 2천 4백만원
· 교원연수 지원	△14억 6천 5백만원
· 기타 교단 선진화 등	△13억 8천 만원
<b>소 계</b>	<b>131억 6천 1백만원</b>

- 교육사업비중 지방재정법 제36조와 2002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등 목적이 지정된 예산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조정이 곤란하다고 사료되나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실효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그 시행여부 및 규모의 적정화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 재검토 대상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검 토 내 용	비고
교직원 체육 대회	46	○ 2002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됨.	
교수-학습방법 개선지원	1,080	○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신규로 계상한 10억 8천만원은 고등학교 배정시 지역별 인근학교보다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학력 향상을 위한 자료구입·개발·활용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여 지원함은 해당학교의 열의 부족시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며, 해당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요구사항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이 타당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학습자료 개발	983	○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자료 개발비 1억 6천 6백만원,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자료 개발비 3억 8천 6백만원, 특기·적성교육 지도자료 개발비 4억 3천 1백만원을 추경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재검토가 요구됨. - 학습자료개발비로 계상한 9억 8천 3백만원은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비로써 교과연구회에 지원하여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추경예산의 취지상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고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섯째, 시설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4,844억 8천 3백만원 보다 1,225억 4천 4백만원(25.3%)이 증액된 6,070억 2천 7백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생수용 및 학교 시설확충	1,101억 8천 7백만원
- 학교신설(9개교)	804억 6천 5백만원
- 교실증축(196개교)	177억 3백만원
- 강당 겸 체육관 신설(6개소)	44억 8천 만원
- 내부비품비(48개교)	11억 9천 7백만원
- 교육과정 개편시설(3개소)	63억 4천 2백만원
• 교육환경개선	68억 8천 4백만원
- 노후 교실개축(1개교)	33억 5천 만원
- 화장실 보수	3억 5천 만원
- 다목적교실 및 체육관 시설(4개교)	30억 원
- 대수선(3건)	1억 8천 4백만원
• 행정기관 시설관리	23억 1백만원
• 교육지원 기관 및 기타 시설비	31억 7천 2백만원

- 시설사업비중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하는 학생수용시설확충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부담할 예산으로써 그 타당성은 인정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은 실효성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규모 및 시기의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재검토 대상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검 토 내 용	비고
학생교육원 진입로 포장공사	80	○ 학생교육원 진입로가 일부 균열 및 파손되어 차량 운행 및 이용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수하여 쾌적한 수련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정도로 시급성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성북교육청 청사증축	340	○ 성북교육청 본관 뒤편 창고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3층 건물을 증축하여 사무실, 직원식당 및 체력단련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 불편해소와 직원 복지향상 및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하여 그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의 규모 및 시기의 타당성 등 추경취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학교부지내 타인소유재산 처리	738	○ 중랑구소재 태릉고의 토지매입비를 정산하여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은 인정되지만, 추경예산으로 반영할만한 시급성은 없다고 판단됨.	

여섯째, 지방채 현황

-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교원명예퇴직수당 부족액 2,881억 8천 4백만원과 학교시설비 부족액 435억 4천 4백만원을 차입 하였음.
- 금융기관에서 교원명예퇴직수당 부족액 2,012억 8천 4백만원, 학교 시설비 부족액 2,224억 2천 9백만원, 교육정보화 추진사업비 712억 3천 6백만원을 차입하여 차입총액은 8,266억 7천 7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 지방교육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지방채구분	기채년도	차입선	차입조건	이율(%)	차입액	기 채 사 유
<b>합 계</b>					<b>826,677</b>	
기타차입금	'99	재정용자 특별회계	3년거치 5년분할상환	5.25	197,677	교원정년 단축에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
	2000				90,507	
	소 계				288,184	
금융기관채	'99	농협	2년거치 3년분할상환	7.65	84,844	
	2000				116,440	
	소 계				201,284	
기타차입금	2000	재정용자 특별회계	3년거치 5년분할상환	5.25	43,544	시급을 요하는 학교 신·증설 및 노후 시설비에 충당
금융기관채	'99	농협	1년거치 2년분할상환	7.65	6,813	
	2000				144,268	
	소 계				151,081	
금융기관채	2001	농협	만기(1년) 일시상환	7.65	71,348	
금융기관채	2000	농협	2년거치 3년분할상환	7.65	71,236	

-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2004년 개교 예정학교 부지매입을 위하여 430억 2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상환재원 지원계획(2003년도 시설교부금으로 교부)과 2004년 개교를 위한 시기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그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 현재 서울시교육청 부채규모가 8,266억 7천 7백만원에 이르는 재정 상황에서는 부채감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 주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곤란하며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등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매년 세입예산을 과소 추계하거나 세출예산을 과대 계상 함으로써 조성된 세계잉여금을 다음해의 추경예산편성의 재원으로 삼아오는 관행은 재정운용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추경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추경예산을 당연시하여 매년 추경이 정례화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사항** : 없음